

제316회 임시회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숙자 의원 대표발의)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
(국민의힘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서초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해 제안 설명을  
드리겠습니다.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 
공작물로 버스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, 자동판매기,  
현금자동입출금기, 상품진열대 등을 규정하고 있고,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
시행령」 제17조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 
버스승강장, 택시승강장,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을  
규정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작물은 조례로  
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그러나 서울시 현행 조례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 
공공시설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

구두수선대 등 만을 규정하고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버스표판매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 시설인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형평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